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4. 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1. 4. 7.
- 다. 상정일자
 - 제2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4. 19.)
 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“지역체육진흥협의회”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 법령의 위임 조문 순서에 따라 현행 조례 조문 순서 정비
 -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5조 ⇒ 안 제12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
- 2)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,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3조, 제4조)
- 3) 위원의 임기, 해촉,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 ~ 제7조)
- 4) 협의회 운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 ~ 제10조)
- 5)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기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5조를 각각 제12조, 제11조, 제13조 및 제14조로 함.
- 신설 조문을 살펴보면, 제3조에는 체육진흥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, 제4조에는 협회의 구성, 제5조, 제6조에 각각 위원 임기와 해촉 규정을,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 협회의 운영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위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이번 법률 및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임의기구의 성격이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금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체육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과 재정적 독립, 그리고 자율성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【관계법령】

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[시행일 : 2021. 6. 9.]